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 구축 및 사건·사고 정보공유〉

■ 김건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87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 구축 및 사건·사고 정보공유	2
2. 부칙(시행일)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건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년 1월 23일
3. 회부일자 : 2026년 1월 26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과 다른 행정기관 간에 협력 및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정보 공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사조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 구축 및 사건·사고 정보공유

개정안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건·사고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u><신설></u>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외교부장관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u>사건·사고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외교부

외교부는 현재 전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관련 전문(電文) 보고 시 경찰·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수신처에 포함하여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정보공유를 포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은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행정안전부

개정안에 대한 별도 제출의견은 없음.

3) 법제처

법제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① 범죄 규명을 위한 수사정보는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관리되어야 한다는 점과 ② 「개인정보 보호법」¹⁾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의 제공 등

1)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 대상 정보의 범위와 요건을 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개정안이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반적 정보공유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0조²⁾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 제도와 중복 적용되거나 적용 관계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음.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제처의 의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현행법에 따른 협력체계 및 정보공유

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제9조는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사조력법 제20조는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현행 제도상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 정보는 관계기관 간 상호 공유되고 있으며, 그 범위에는 ① 해당 재외국민의 개인정보, ② 사건·사고의 구체적 경과 및 ③ 사실관계, 재외공관 보고의 경우 ④ 영사조력의 내용 및 ⑤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됨.

현재 관계기관 간 공유되고 있는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국내 경찰관서에서 접수한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실종, 연락두절, 범죄피해 의심 등) 중 재외공관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해당 정보는 외교부 본부를 경유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전달되며, 재외공관은 이를 토대로 해당 국민의 체류 여부 확인, 구체적 소재 파악 및 안전 확인 등 필요한 영사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둘째,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관련 주요 사건·사고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이 사건·사고의 경과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 상세 내용을 외교부 본부에 전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해당 전문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기관에도 공유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일부 재외공관에서 전문 보고 시 부주의 등으로 정보공유가 필요한 관계기관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정보공유가 필요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 의견임. 아울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에 따라 강력사건에 관해서는 더욱 철저히 보고토록 수시로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한편, 법무부·경찰청 등에서도 형사사법공조 및 실종자 소재 확인, 수사 정보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에 근거하여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협력 중임.

2)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

개정안은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국민 대상 중대 사건·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기반을 법률상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현재는 외교부와 경찰청이 각각의 채널을 통하여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상호 간 정보공유는 개별 사건·사고별로 공문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하여 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사건·사고 통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³⁾.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건·사고 당사자의 과거 실종 신고 이력, 연고자 연락처, 수사 진행 상황 등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받을 수 있을 경우, 재외공관의 초기 대응 및 가족 통지, 소재 확인 등 영사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보다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납치·감금·인신매매·사기 등 범죄의 양상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고, 국내외 기관 간 정보 연계의 신속성이 피해 확산 방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공유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를 공

3)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는 외교부장관(재외공관장을 포함)과 다른 행정기관 간 협력 및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캄보디아 피해자 통계가 부처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 사례도 있음.

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 대상 정보의 내용·범위 및 공유 기관 등이 법률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

영사조력법 제2조제3호4)에 따르면 ‘사건·사고’의 범위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폭넓게 정의되어 있는바, 그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에는 범죄 관련 정보, 수사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정보는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할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제3자 제공 요건이 적용되는 정보일 수 있으므로, 공유 대상 정보의 범위와 요건을 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은 법률 단계에서의 예측 가능성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입법례를 살펴보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도 공유 대상 정보의 성격이나 범위를 일정 부분 특정하거나 예시함으로써 정보 공유의 범위를 법률 단계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됨.

따라서 주요 공유 대상 정보의 범위와 공유 목적 등을 법률에 직접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3. “사건·사고”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
4. ~ 6. (생략)

명시하거나 예시를 제시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등, 어떠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법률 단계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 입법례 >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인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현행 영사조력법 제20조⁵⁾는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이 사망·실종된 경우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 정보공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수용하여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공유 대상 정보의 범위를 예측가능하도록 명확히 구체화하고, 두 규정 간 기능적 차이를 분명히 하여 법체계 전반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지방자치단체의 포함 여부

개정안은 협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외교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사건·사고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사례는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 공유할 정보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종로구청을 통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하여 재외국민의 국내 연고자 정보를 파악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의 정보공유 사례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상호 간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도 많지 않다는 설명임.

이에 따라 협력 대상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별도의 범위 설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5) 조문 체계상 위치의 적정성

개정안은 영사조력법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제2항을 신설하여,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건·사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 제9조는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주로 해외 현지에서의 협력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외교부장관과 국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규율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규율 대상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

즉, 현행법 제9조는 재외공관의 대외적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인 반면, 개정안은 국내 기관 간 협력 및 정보공유라는 별도의 협력 체계를 다루고 있어 조문의 성격이 상이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0조가 자료 제공 요청 및 협조 요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정보공유 규정은 제9조의 현지 협력 규정과 제20조의 자료 요청 규정 사이에서 독립적인 협력·정보공유의 원칙 규정으로 기능하게 되는바, 이를 현행 제9조의 하위항으로 두기보다는 별도의 조문(제9조의2)으로 신설하여 국내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정보공유의 기본 원칙과 범위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종합 의견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해외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정보공유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법률상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현행 법체계에서도 일정 수준의 협력 및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사건·사고 정보에 개인정보 및 수사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점, 그리고 공유 대상 정보의 범위와 요건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공유 대상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거나,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요건을 한정하고, 협력 대상 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입법기술적 대안으로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 대상 정보를 “사건·사고 대응에 필요한 범위”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방식은 정보공유의 목적을 사건·사고 대응으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법률 단계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하위법령에 대한 포괄적 위임에 따른 논란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및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보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부칙(시행일)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개정안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정비가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이 아니라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63